

□ 변경 대비표

변경시행일 : 2013년 4월 18일

신한 BNPP BEST 법인용 MMF GS-1호

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- (1) 기재사항 변경
 - 1 신탁업자보수 인하, 종류 C1 판매보수 인하
 - 2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
 - 3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 - 4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전체 종류 신탁업자보수 인하, 종류 C1 판매보수 인하 : 제2부 13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 신탁업자 보수 : 0.020%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 : 0.100%	제2부 6. 집합투자기구의 구조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 신탁업자 보수 : 0.015%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 : 0.065% (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)
2.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 : 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	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. 투자제한 (1) (본문 생략) 1. (생략) 2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3.~10. (생략)	2부 8. 집합투자기구의 투자대상 다. 투자제한 (1) (본문 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재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[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, 매매, 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]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가. 채무증권 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) 나. 어음 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) 3.~10. (현행과 같음)
3. 운용전문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: 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5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① 책임투자운용인력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3월 31일)
4. 집합투자업자의 재무제표 및 운용자산 규모 업데이트 :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	- 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다. 최근 2개 사업연도 요약 재무내용 라. 운용자산 규모	제4부 1. 집합투자업자에 관한 사항 라. 운용자산 규모 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3월 31일)

간이투자설명서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신탁업자보수 인하, 종류 C1 판매보수 인하
- 2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신탁업자보수 인하, 종류 C1 판매보수 인하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 신탁업자 보수 : 0.020%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 : 0.100%	제3부 1. 보수 및 수수료에 관한 사항 나. 종류형 구조 종류 C-i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 신탁업자 보수 : 0.015%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 보수 : 0.065% (이하 관련 내용에 공통 적용)
2. 투자운용인력의 운용규모 업데이트 : 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관한 사항	제2부 6. 투자운용인력에 대한 사항 ①책임투자운용인력	최근현황갱신 (기준일: 2013년 3월 31일)

집합투자규약 변경 내역

(1) 기재사항 변경

- 1 신탁업자보수 인하 및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
- 2 자본시장법 및 법시행령 개정사항 반영
- 3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

항목	정정전	정정후
1. 신탁업자보수 및 종류 C1수익증권 판매보수 인하 : 제39조 (보수)	제39조 (보수)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 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20]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1.00]	제39조 (보수) 종류 C1 수익증권, 종류 C-P 수익증권, 종류 직판 수익증권, 종류 A-u2 수익증권신탁업자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15] 종류 C1 수익증권 판매회사보수율 : 연 1,000분의 [0.65]
2. 자본시장법 및 법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: 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	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② <생략>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~ 5. <생략> (신설)	제44조 (집합투자업자 및 신탁업자의 변경) ①~② <현행과 같음> ③ 신탁업자 변경의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수익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아니하고 변경할 수 있다. 1. ~ 5. <현행과 같음> 6. 법시행령 제245조 제5항에 따라 둘 이상의 집합투자기구의 자산을 다른 모집투자기구로 이전함에 따라 그 집합투자기구의 신탁업자가 변경되는 경우
3. 금융투자업 개정사항 반영 : 제 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	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 (본문생략) 1. (생략) 2.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를 기준으로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5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 및 2%를 초과하여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행위. 이 경우 동일법인 등이 발행한 증권 중 지분증권과 지분증권을 제외한 증권은 각각 동일종목으로 보며, 다음 각목의 경우에는 각목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동일종목 채무증권에 투자할 수 있다. 가. 국채증권, 한국은행법 제69조에 따른 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%까지 투자하는 경우 나.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(한국은행통화안정증권 및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원리금의 지급을 보증한 채권은 제외한다)에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30%까지 투자하는 경우 3.~10. (생략)	제19조 (운용 및 투자 제한) ① (본문 현행과 같음) 1. (현행과 같음) 2. 이 투자신탁자산을 채무증권에 운용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채무증권의 취득 당시 다음 각 호의 한도를 초과하여 동일인이 발행한 채무증권(국채증권, 정부가 원리금의 상환을 보증한 채무증권, 지방채증권, 특수채증권 및 법률에 따라 직접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어음(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업어음증권 및 영 제79조제2항제5호 각 목의 금융기관이 할인·매매·증개 또는 인수한 어음만 해당한다)을 제외한다)에 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. 가. 채무증권 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5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채무증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2로 한다) 나. 어음 :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3(다만, 최상위등급의 차하위등급의 어음은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0분의 1로 한다) 3.~10. (현행과 같음)